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심의회규정
일부개정규정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업무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심의위원회 구성 중 부위원장을 변경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직위 명칭 변경(안 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조 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및 건설안전교통국을 둔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훈령 제12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심의회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하여”를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련부시장에 대하여”를 “관련부시장에게”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심의회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박 검 수

2015년 11월 06일